

## 조교인사규정

제정 1994. 12. 20.  
제27차 개정 2023. 09. 1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**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88조의2에 의한**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조교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3.09.11.)

**제2조(관리부서)** 조교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정원이 배정된 대학(원) 또는 행정부서(이하 “부서”라 한다)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15.02.24., 2022.04.26)  
[제목개정 2022.04.26.]

**제3조(자격)** ① 조교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(졸업 예정자 포함)로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임용한다. (개정 2002.7.31) 항 개정(2008.4.7, 2022.04.26)  
1. ~ 2. 삭제 (2022.04.26.)  
② 대학(원) 또는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, 제1항의 자격에 특별한 자격을 부가하여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. (항 신설 2008.4.7.) (개정 2022.04.26.)

**제3조의2(조교의 종류)** 조교는 직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행정조교 : 학사에 관한 행정업무를 보조
2. 교육조교 : 교육과 실험·실습·실기를 보조
3. 연구조교 : 연구업무를 보조

[본조신설 2023.09.11.]

**제4조(임용)** ① 조교의 신규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, 조교 임용 예정 대학(원)장 또는 부서장의 제청으로 본교 계약직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 (개정 2004.8.25. 2015.02.24., 2018.01.23., 2022.04.26)  
② 조교가 임면된 경우 해당 대학(원)장 또는 부서장은 그 임면사항을 교무연구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4.4.9. 2015.02.24., 2018.01.23., 2019.12.02., 2022.04.20., 2022.04.26)  
1. ~ 2. 삭제 (2022.04.26)  
③ 삭제 (2022.04.26)

**제5조(정원)** 대학(원) 또는 부서의 조교 정원은 편제정원, 재학생 수, 학과 및 부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21.11.22., 2023.09.11.)

- ② 삭제 (2015.02.24.)
- ② (신설 2021.11.22.), (삭제 2023.09.11.)
- ③ 삭제 (2021.11.22.)
- ④ 삭제 (2021.11.22.)
- ⑤ 삭제 (2013.6.26)
1. 삭제 (2013.6.26)
2. 삭제 (2013.6.26)
3. 삭제 (2013.6.26.)

[전문개정 2023.9.11.]

**제6조(직무)** ① 조교는 소속 대학(원)장 또는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학사에 관한 행정업무와 실험실습 및 실기 등 학생지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(개정 2022.04.26)

1. ~ 5. 삭제 (2022.04.26)

② 조교는 교무연구처장의 지시를 받아 교내에서 실시되는 시험에 관한 감독과 학사에 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 (신설 2022.4.26.)

**제6조의2(업무분장)** 조교는 소속 대학(원)장 또는 부서장의 주관으로 분장한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[본조 신설 2022.04.26]

**제7조(임용기간)** ① **조교**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06.4.3. 2015.02.24., 2021.11.22., **2023.09.11.**)

② 삭제 (2021.11.22.)

③ 재임용이 필요할 때에는 대학(원)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1회(1년에)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 단, 재임용을 포함한 총 임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 (개정 2000.10.24, 2004.8.25, 2007.11.8., 2014.4.9, 2015.02.24., 2017.03.28., 2018.01.23., 2021.11.22., 2022.04.26)

④ (항 삭제 2006. 4. 3) (항 변경 2013.6.26)

⑤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가 재임용되지 않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 (항 변경 2013.6.26)

⑥ 임용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 희망일 30일 전에 소속 대학(원)장 또는 부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(항 신설 2013.6.26.) (개정 2019.12.02., 2022.04.26)

[제목개정 2021.11.22.]

**제8조(재직기간)** 삭제 (2021.11.22.)

**제9조(근무평정)** ① 대학(원)장 또는 부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조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 (개정 2019.12.02, 2022.04.26)

② 조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본교 계약직에 준하여 적용한다. (개정 2018.01.23., 2019.12.02, 2022.04.26)

③ 삭제 (2022.04.26)

④ 삭제 (2022.04.26)

**제10조(복무)** ① 조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소속 대학(원)장 또는 부서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 (개정 2022.04.26)

② 그 밖에 조교 복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교 계약직에 준하여 적용한다. (개정 2022.04.26)

③ 삭제 (2022.04.26)

④ 항 삭제 (2007.11.8)

**제10조의2** 삭제 (2022.04.26)

**제11조** 삭제 (2022.04.26)

**제12조(조교재임용심사위원회)** (조 삭제 2017.03.28)

**제13조** 삭제 (2022.04.26)

**제14조** 삭제 (2022.04.26)

**제15조** 삭제 (2022.04.26)

**제16조** 삭제 (2022.04.26.)

**제17조(준용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, 교원인사규정, 교직원 복무규정, 교직원 인사규정 운영내규, 계약직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(조 변경 2013.6.26)(조 번호 변경 2015.02.24.) (개정 2022.04.26.)

**부칙**

이 규정은 199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이 규정은 199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이 규정은 199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재임용에 대한 경과조치) 제7조 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1일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**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제8조 연임기간에 대한 경과조치)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5일 임용 및 임용부서 변경자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**

이 규정은 200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교원인사위원회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은 제3조(자격)2호, 제4조(임면) 제1항 및 제7조(임기)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0월 1일 이후 조교임용(신규임용, 재임용)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**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조교정원표에 의거 임용된 자의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**부칙**

이 규정은 200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이 규정은 200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과-453호, 2005.4.27)

이 규정은 200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과-330호, 2006.4.3)

이 규정은 200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과-570호, 2006.6.12)

이 규정은 200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과-1182호, 2007.11.9)

이 규정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과-471호, 2008.4.8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제3조 자격의 적용시점) 조교의 자격은 2008년 3월 1일 임용자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과-784호, 2008.7.7)

이 규정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714, 2011.6.2)

이 규정은 2011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875, 2012.6.21)

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376, 2013.6.26)

이 규정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269, 2014.4.9)

이 규정은 201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150, 2015.02.24)

이 규정은 2015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130, 2017.03.28)

이 규정은 2017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42, 2018.01.23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0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7조 및 제8조 개정 이전에 임용된 조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593, 2019.12.02)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613, 2021.11.22)

이 규정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257, 2022. 04. 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613, 2022.4.26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1896, 2023.09.11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조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교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.